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구미시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정비와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로 2009.12.31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중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주택가격 3억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로 명확하게 함(안 제6조의2)
-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구미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구미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안 제9조의2)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12.31일 자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 급등으로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함(안 제17조)
 - 전방조정자동차는 승합차 세율에서 승용차 세율로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감면, 2009년 33%감면
 - 7~10인승(전방조정자동차 제외) 자동차세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50% 감면에서 2008년 33%감면, 2009년 16%감면
-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당초 취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266조, 제196조의5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본문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제7조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에” 를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 중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각 호에서 정하는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

현행	개정안	사유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생략) 3.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1.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제47조제1항 ----- ----- ----- -----.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령 변경 (‘06.10.4)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

현행	개정안	사유
제17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1. ----- -----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12.31 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참 고 자 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정의)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과학관육성법

제6조 (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 등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 형 전 세 버 스	70,000원	-
소 형 전 세 버 스	50,000원	-
대 형 일 반 버 스	42,000원	115,000원
소 형 일 반 버 스	25,000원	65,000원